

의안번호	2215237
의 퇴 인	김미애 의원
회 답 일	2026. 3. 24
추 계 번호	25B69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5의2호 신설) 5의2.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인력수급 동향·전망 및 실업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함(제3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안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2. 상세 사유

- (안 제6조제5의2호)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시행할 시책의 내용과 이를 위한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¹⁾,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안 제17조)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에 있어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동향·전망 및 실업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공표시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도표에 수록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통계조사의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존 통계조사의 내용이 조정 및 변경되거나 조사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과 이로 인한 재정 변화 여부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표에 있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완지표와 통계기준의 유형과 내용 등에 따라 발생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1) 참고자료 참조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코드)	사업 개요	2024	2025	2026
1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1)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9종(조사 통계 6종, 부가조사 2종, 가공통계 1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분석 및 기초자료로 제공	26,164	26,699	30,384
2	고용동향조사분석 (1040-300) -고용동향조사	청년, 고학력자,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 구조, 직업이동과 같은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4,066	3,023	4,371
	고용동향조사분석 (1040-300) -인력수급전망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인력수급 불균형 및 직무 불일치를 예방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배분에 기여	954	1,047	1,048
	고용동향조사분석 (1040-300) -고용동향분석	고용보험, 구인·구직 및 직업훈련 등의 고용행정 통계를 활용하여 고용동향을 분석·모니터링하고 고용노동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및 정책 제안 제공	363	364	365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필요시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표]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코드)	사업 개요	2024	2025	2026
1	고용유지지원금 (1045-350)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일부 지원	71,372	70,255	70,255
2	고용창출장려금 (1046-350)	· 취업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기업, 장년고용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48,277	26,003	21,410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특) (1056-317)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부에서 공모 및 선정을 통해 경상사업비 지원	106,292	107,864	150,108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056-353)	·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	14,687	5,911	610
5	건설근로자고용지원 (1060-301)	· 건설업 중장기 직종별·기능등급별 인력수급 현황 전망·분석, 청년·여성 등 기능인력 양성 및 건설업 진입을 지원	—	—	1,480
6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1070-300)	· 고용센터의 기업채용지원, 구직자 취업지원, 심리안정지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등 맞춤형 채용·취업을 지원	6,185	9,199	11,904
7	국민취업지원제도 (1234-300)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942,515	845,709	1,012,830

연번	세부사업명(코드)	사업 개요	2024	2025	2026
8	구직급여 (1280-350)	·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실직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10,914,396	10,917,074	11,537,611
9	고용안정장려금 (1345-350)	·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재직 근로자 또는 채용(대체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	347,495	390,894	439,394
10	중장년 경력지원제 (1336-305)	·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3,640	8,417
11	중장년충취업지원 (1340-300)	·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및 구직자에게 생애경력 설계, 전직, 재취업 지원, 특화 서비스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20,052	18,443	24,844
12	모성보호육아지원 (1345-358)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 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지원 통해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2,496,830	4,022,454	4,072,832
13	고령자고용안정지원 금 (1347-350)	·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62,102	56,730	53,560
14	장애인고용장려금 (1452-303)	· ①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②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규모사업주(5~49인)가 장애인 신규 고용 및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③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의무고용 미달 중소기업(50~299인)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	353,371	377,377	403,220

연번	세부사업명(코드)	사업 개요	2024	2025	2026
15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452-306)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근로지원비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사업장 작업환경개선지원,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248,006	252,114	275,296
16	장애인취업지원 (1452-311)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고용유도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적합직무 제시와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4,211	33,411	36,849
17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 (1452-315)	· 장애인에게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구직역량강화→고용안정·사후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24,701	26,452	27,480
18	청년일자리창출지원 (1043-301)	·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사업주 및 청년 지원	657,680	777,181	907,959
19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051-305)	· 청년층에 대한 진로지도, 일경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244,113	291,779	284,752
20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1051-306)	· 신직업·미래직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제고, 직업조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통합 운영·관리, 심리검사 등 직업진로지도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전문가 양성 사업	5,378	4,559	4,327
21	청년미래플러스 (1051-308)	· ①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일경험 수료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및 직장적응을 위해 사내 멘토링, OJT와 온보딩, 산업 내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 ②경력있는 실업 청년에게는 업종별 성장로드맵을 근거로 경력 재설계, 재취업 등 지원	-	2,000	4,060

연번	세부사업명(코드)	사업 개요	2024	2025	2026
22	내일배움카드(일반) (1131-300)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584,906	580,161	627,325
	내일배움카드(고보) (1151-352)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할 수 있도록 지원	734,204	603,198	508,979
23	사업주직업훈련지원 금 (1152-350)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 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 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의 경 쟁력 제고	356,828	300,670	249,668
24	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사업 (1154-356)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 을 위하여 재학생(고교, 대학)과 재직자 등을 기업이 학습근로자 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 (OJT)을 제공	311,632	276,632	267,952

자료: 고용노동부